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202199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20219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8가합5520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피고, 피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변론종결 2021. 11. 26.

판결선고 2021. 12.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8가합552047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12,796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86,79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 3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우선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피고는, D과 E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09. 8. 1.부터 2019. 7. 31.까지 10년으로 정하였는바, 원고의 D, E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는 위 담보책임기간의 종기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하자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각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하자발생기간을 뜻하므로, 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등 참조), 이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시작한다(민법 제166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자 중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원고의 D, E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각 하자의 최후 발생일인 2010. 6. 26., 2011. 6. 26., 2012. 6. 26.에 적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시작된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2. 28. 원고가 D,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